의 정 정 보

2007 - 8　　　　8. 10

Ⅰ.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 1

Ⅱ.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 … ……… 10

Ⅲ.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 … ……… 28

Ⅳ.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 ……… 36

<부록> : 행복한 책읽기 ……… … … … … … … ……… 58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실 ☎(042)606-502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의정보고서 등의 모사전송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액기부로 대중화되고 깨끗해진 후원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편보다 발송료가 저렴한 팩스사용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의정보고서 및 후원회우편모금 안내장을 파일로 제작해서 팩스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여부.
2. 팩스송신에 있어 인터넷팩스발송대행사이트(예: 엔팩스)를 이용해 다량 발송 가능여부
3. 후원회 우편모금 관련 안내장을 팩스로 발송하는데 있어 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2007. 7. 10. 국회의원 신학용 질의)

《답 변》

1. 의정보고서의 모사전송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선거일전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문 2와 같이 용역대행사에 의뢰하여 전송할 수 있을 것임.

2. 후원금 모금 등 안내장의 모사전송에 대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후원금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한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함)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송통수에 산입하고 안내장에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할 것임. **(2007. 7.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정당 등의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해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위와 같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동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지?
   나.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 당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충당을 위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일 수 있는지? 당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지급제도 운영을 위해 당비를 활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지?
   라.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면, 포상금지급에 경선후보후원회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각종 당원집회에서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지급 및 기부행위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50배) 부과 고지를 통해 금품선거 등에 관한 예방차원의 홍보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 당원집회시 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례 등을 적시한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 방지 및 예방차원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귀 위원회 차원에서 상기 내용과 같은 홍보 안내문을 만들어 당원 집회에서 활용하도록 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2007. 7. 10.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선출 경선후보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 안병훈·홍사덕 선거대책위원장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관리기구 또는 경선후보자의 경선선거사무소에서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소속 당원에게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와 금품등 수수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제도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작성·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문 2의 나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위 포상금제도 및 50배의 과태료 제도를 인쇄물·시설물이나 방송·신문광고·인터넷광고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음. (2007. 7.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편입할 부동산 기부 관련

《질 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춘진 모친 강옥례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 소유의 밭 2,360㎡ 중 50㎡를 전북 부안군 상서면사무소 지석마을 안길 및 하수도공사 사업 용도로 부안군에 기부할 때「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옥례는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닙니다. (2007. 7. 4. 국회의원 김춘진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법률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에 편입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7. 7.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종친회의 종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축사 게재 등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곡산 연씨 대동종친회입니다. 매년 종보를 발간함에 있어 고위 공무원(도지사, 군수)의 축사와 격려사를 의뢰하고자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을 요망합니다. (2007. 7. 5. 곡산 연씨 대동종친회 회장 연강흠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친회의 임원 등 종중원인 경우 종친회의 종보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여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종중원이 아닌 경우에는 게재 목적 · 내용, 배부시기 및 대상 등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07. 7. 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장소 등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집회에 의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바, 개최장소의 제한여부 및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2. 선거기간 전에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지역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바,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2007. 7. 10. 국회의원 최재성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0. 2. 9. 국회의원 박원홍 질의에 대한 2000.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 관하여는 덧붙임 2005. 5. 24. 귀하의 질의에 대한 2005. 6.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7. 7.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노상의정활동보고의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본 의원은 2월부터 3월 27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 차량에 스피커를 부착한 노상의정보고활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성 문제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선거법상 의정보고활동은 공개된 장소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된 장소로 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석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2월부터 3월 27일까지 동사무소, 노인정, 교회 등의 장소를 이용해 의정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직자의 가정집에서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2000. 2. 9 국회의원 박원홍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의정활동보고는 집회・보고서・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바,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오고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집회에 의한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유사한 선거운동이 되어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귀문과 같이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당직자의 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는 등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0.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역현안과 관련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부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재, 지역구 내에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및 자연부락 부녀회, 청년회, 학부모회 등에서 지역 및 각 단체별 현안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요청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참석요청에 응하여 초청간담회를 가지는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 만약 위법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2005. 5. 24. 국회의원 최재성 질의)

【 답 】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지역구내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귀문과 같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간담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별한 현안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선거구역을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 등에 따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간담회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

(2005. 6.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192호, 2007. 7. 26.공포]

1.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을 조정하고, 국가기반시설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안 제29조의2 및 별표 3 신설)

(1)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별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국가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 인력의 지정 · 관리(안 제4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지정 · 관리하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지정 · 관리 하도록 함.

(3) 국가기반시설의 마비 등의 경우에도 분야별 필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안 제46조의2 신설)

(1)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의 문자 또는 음성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시내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시외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재해발생시 위험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51호, 공포 2007. 7. 27.】

1. 제정이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 관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등의 수립 · 시행,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안 제5조)

(1) 시・도지사 등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관리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안 제6조)

(1)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함.

(2)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도록 함.

다.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안 제8조)

(1) 붕괴위험지역에 각종 센서와 계측기를 매설하여 지반의 침하・활동・전도 및 붕괴 등의 위치변화 자료를 분석하여 붕괴위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계측자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실시간 제공하도록 함.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주민대피 등에 활용함으로써 인명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안 제10조)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각종 인·허가를 하는 때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한 급경사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2)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토석의 굴착,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의 변경, 수목벌채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3) 붕괴위험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등의 수립(안 제12조 및 제13조)

(1)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은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과 이에 따른 1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안 제20조)

(1) 전국의 지반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반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관리기관은 급경사지의 제원・사진・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보급 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계측업의 등록(안 제22조)

(1)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리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급경사지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계측결과의 객관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측관리업종이 육성・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204호, 2007. 7. 27.공포]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법률 제8272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하는 한편, 국기에 대한 맹세문 등을 보다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사업(안 제2조)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국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기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기선양사업(國旗宣揚事業)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기에 대한 맹세(안 제4조)

국민제안, 여론조사 등을 거쳐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보다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함.

다.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의 제작·설치 방법(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 국기의 표준규격, 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

(2) 국기게양대는 국기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라. 국기 게양 및 강하 방법(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 국기는 원칙적으로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달아서 게양하되, 교육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실내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기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 및 강하식 등 국기 게양 및 강하방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80호, 2007. 8. 3.공포]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조정(현행 제2조제3호 차목 삭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를 위반한 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임시조치 청구요건의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의 신설(안 제8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

(1)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요구권 신설(안 제21조)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를 명문화하여 판사는 조사관 외에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유형 추가(안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1)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함.

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안 제29조제5항 및 제41조)

(1)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임시조치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결정의 변경 신청권(안 제29조의2 신설)

(1)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및 위반시 처벌 등을 고지하도록 함.

(2) 판사가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아.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40조제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감호위탁기관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과태료 상한의 인상(안 제65조)

소환 불응자,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불응자,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 처분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91호, 2007. 8. 3.공포]

1. 개정이유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비료공급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료업자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농업인과 비료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농약성분 등 비료의 원료로는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 확대(안 제7조)

(1)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정되어 독점에 따른 비효율 등으로 비료공급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2)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3) 비료공급기관의 다양화로 비료공급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업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 이양(안 제11조 및 제12조)

비료 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다. 판매·유통 금지대상 비료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제7호 신설)

(1) 농약성분 등 독성물질이나 비료의 원료로 부적합한 물질이 혼입된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농가에서 농약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에 대하여는 양도·진열·판매·유통 및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함.

(3) 불량비료의 유통방지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08호, 2007. 8. 3.공포]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안 제27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안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8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안 제33조의2,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 신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인정(안 제39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함.

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도입(안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 제2항 신설)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8634호, 2007. 8. 3.공포]

1. 개정이유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 방송업자의 홍보영상 송출(안 제6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동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피해 청소년의 보호 확대·강화(안 제14조 및 제15조)

(1) 친부(親父) 등에 의한 성범죄는 지속성을 특성으로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2)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안 제16조)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민사손해배상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 막고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안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성범죄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권자를 관련 피해자 등에서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확대함.

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확대(안 제42조)

(1)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취업제한기간이 현행 형 확정 후 5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짧아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무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취업제한의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 조정함.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29호, 2007. 8. 3.공포]

1. 제정이유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취수해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개발자에게는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면허를 부여하며, 해양심층수의 취수·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등을 규정하는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1) 해양심층수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되,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취수해역의 지정 등(안 제9조)

(1)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해역을 취수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게 하려는 것임.

(2) 해양심층수를 취수·판매할 수 있는 취수해역에 한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허용하고, 취수해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마련한 후 신청을 하며,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취수해역별로 취수가능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방법을 미리 마련하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함에 있어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재정적·기술적 능력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존속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이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안 제24조 및 제25조)

(1) 해양심층수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과 이를 통한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양심층수에 부합되는 수질기준 및 이에 따른 수질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되,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양심층수수질 공정시험방법을 마련하도록 함.

(3)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공신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해양심층수가 생산·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을 위한 근거·절차 및 준수 사항 등(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먹는물관리법」과는 별도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히 위생적인 생산 ·유통관리를 위하여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과 그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하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조시설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

(3) 기존의 먹는 샘물 외에 먹는해양심층수가 먹는 물의 하나로서 제조·판매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는해양심층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양심층수의 취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안 제39조)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한정된 국가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판매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한정된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취수량에 상응하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먹는해양심층수 등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1) 해양심층수의 취수로 인한 주변 해역의 수질관리 및 해양환경오염방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생산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2)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증명표지제도를 도입함.

(3)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생산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해양심층수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대검예규 제350호,2003.12.13.〉
〈대검예규 제365호,2004.10. 8.〉
〈대검예규 제407호,2006. 9.25.〉
〈대검예규 제419호,2007. 7.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22호)에 따라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및 주무부서) ①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배부, 제도의 운영은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당해 행정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③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행정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주체가 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임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검찰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5조(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①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④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가 결정하여야 하나, 단독으로 하기 곤란한 중요한 사항은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및 운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대검찰청 각 부·국·실의 행정정보는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첨 1』행정정보의 공표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공표하고, 이에 따라 소관 사항 처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 각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범위 등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각급검찰청 및 지청은 소관 행정정보 가운데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범위내에서 당해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의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①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②동 세부기준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업무의 지도·감독)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밖에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교육 실시)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기반 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정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코너의 설치 등 체계적인 정보공개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 8. 1.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타시·도 제정조례

1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3

발의연월일 : 2007. 7. 9.
발 의 자 : 김인식의원외 13인

1. 제정이유

대전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편의시설 설치검사, 사전검사 대상,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수당, 직무,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라. 관계공무원·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2조).
마.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나. 합 의 :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관련 기관 가운데 2곳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등의 허가에 있어 허가 이전에 반드시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검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한다) 3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을 둔다.

②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장이 필요한 자
4.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5.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위촉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요원의 직무)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관계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 이를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검사 결과의 반영) ①해당부서에서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jeon.kr]

2 차질없는 국가기간 교통망건설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10

제안년월일 : 2007. 7. 5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1. 주 문

차질 없는 국가기간 교통망 건설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이 결의한다.

2. 제안이유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남지역의 주요 교통망중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국도 2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완공시기를 구간별로 각 3년씩 연장하고

○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국도 13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수요를 재검토하며

○ 「보성~임성 철도」는「목포~광양 고속도로」와 중복 되므로 완공 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 낙후된 전남지역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기간 교통망 건설은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고

○ 서해안 고속도로의 진도까지 연장,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여수까지 연장,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건설, '서해철도(목포~군산)' 건설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결의안 : 별 첨

○ 송부처 : 국회, 정당대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교통연구원

차질없는 국가기간 교통망건설 촉구 결의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남지역의 주요 교통망중「목포~광양 고속도로」는 국도 2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완공시기를 목포~장흥간은 2010 → 2013년, 장흥~광양간은 2015 → 2018년으로 각각 3년씩 연장하고,「광주~완도 고속도로」는 국도 13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수요를 재검토하며,「보성~임성 철도」는「목포~광양 고속도로」와 중복 되므로 완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전남지역 경제계와 주민들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크나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전남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상실감과 상대적 발탁감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근 서남권의 남악신도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대불·삼호산단, 목포신항, 무안국제공항과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 광양항 컨부두,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준비, 광양·여수산단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도민들은 다시 시작 하자는 마음을 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先수요, 後개발」의 논리로 낙후와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지역민들의 희망의 싹을 지우려 하고 있다.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서는 국도와 고속도로, 철도와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의 중복성을 이유로 사업기간의 연장내지는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도와 고속도로, 철도와 고속도로는 수송대상과 수송체계 등 그 역할이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하여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지역이 낙후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 된지 오래인 작금의 현실에서, 현재의 경제성 보다는 경제창출의 근간이 되는 SOC의 선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이념으로 하는 참여정부 마저도 경제성의 논리를 앞세워 전남지역의 국가기간 교통망 건설을 연기하거나 재검토 할 경우, 우리 전남지역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기간 교통망 건설은 당초계획 대로 추진할 것과,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3대 도서인 진도까지 연장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대비와 여수국가 산단의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수까지 연장하고, 또, 고흥 우주센터 활성화를 위한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건설과 인천, 목포, 부산, 강릉의 전국 U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한 '서해 철도(목포~군산)' 조기 건설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보성~임성 철도'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

1. 정부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진도까지 연장,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여수까지 연장,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건설, '서해철도(목포~군산)' 건설을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의원 일동

[자료출처 : 전라남도의회, http://www.jnassembly.go.kr]

3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7.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외 12명

1. 주   문

한미FTA 협상 타결로 제주지역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향후 국회 비준과정이나 한·EU, 한·중 FTA 협상 대책 등에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어 FTA 협상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FTA 대응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함

첫째, 한미FTA 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피해전망조사

둘째, FTA등 개방의 추세에 따른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셋째,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중앙절충 사업

넷째, 기타 FTA 관련 사업 등

따라서, 제주특별자차도의회 차원의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더 종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3. 위원회 명칭

○ 위원회 명칭 : FTA대응특별위원회

4. 위원회 정수 및 활동 기간

○ 위원회 정수 : 15인 이내

○ 활동 기간 : 2007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1년)

5. 세부활동 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의결로 채택 시행

6.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www.council.jeju.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1 『살기좋은지역 특구』 지정 본격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전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살기좋은지역 특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살기좋은지역 특구지정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안을 마련, 행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내용 : 별첨

【 특구신청 절차 】

① 주요내용 공고(공고기간 20일 이상), ②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공고일부터 16일 경과 후)
③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④ 지방의회 의견 청취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토지이용계획 수립 경우에 한함), ⑥ 특구 신청

○ 행자부는 30개 시범지역의 종합창구가 되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지역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 시범지역별로 특구지정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7.11)하였으며,
-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범지역 설계용역 추진과 동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8~9월(매월 20일)까지 행자부가 일괄 접수를 받아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에 따라 신청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 "살기좋은지역 특구"지정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재정적인 지원으로 행자부가 시군의 중앙부처 종합창구로서 규제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의미있는 행보이다.

〈참고 1〉

30개 시범지역 특구지정 추진계획 총괄내역

시·도	시·군	마 을	신청 예정일	비 고
부 산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10월 중	
경 기	안성시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	12월 중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미 추진	
강 원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10월 중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미 추진	
	화천군	생태형 지역만들기	10월 중	
충 북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8월 중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9월 중	
충 남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	11월 중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미 추진	
전 북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미 추진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10월 중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미 추진	
전 남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미 추진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미 추진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9월 중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	10월 중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미 추진	
	완도군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	미 추진	
	진도군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	미 추진	
경 북	포항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미 추진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	기 지정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10월 중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10월 중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기 지정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10월 중	
경 남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미 추진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8월 중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9월 중	
제 주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10월 중	

〈참고 2〉

지역특구 지정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유형별 예시

1 교육 특구

원어민에 의한 외국어 교육이 가능토록 학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허용(외국인 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허용,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 (2년⇒3년)
- 외국인 교원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특구장이 사증발급 추천)
-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기초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장 선발·학사운영, 학생모집 등의 자율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유출 방지

- 시·군·구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자립학교의 지정 특례
- 학교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별도 설정 : 학교건축
-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 학교건축

2 산업, 연구개발(R&D) 특구

산업단지(국가, 지방, 도시첨단, 농공)를 조성하고, 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 임대료 자율결정
- 산업단지 내 사업자 대신 공단 등이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고용관리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150% 범위 내) :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도로점용 허용 : 대외홍보 강화

해외 우수연구 인력의 유치,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 연구원의 체류기간 연장(2년 ⇒ 3년), 특구의장이 사증발급 추천서 교부
- 특화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허용
-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통한 연구교류 촉진
-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3 의료, 사회복지 특구

의료단지를 조성하여 의료시설 건립 및 연구기관을 유치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고용창출 도모

- 산업, 연구개발 특구모델의 단지조성 적용특례 준용
- 외국 연구인력의 체류기간 연장(2년⇒3년), 특구의 장이 사증발급 추천서 교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법인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도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 ▸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 시설
  - ▸ 장례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 별도의 식품표시기준 허용(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 시)

4 관광, 레포츠 특구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의제
- 골프, 스키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권한 특구의 장에게 이양
- 골프장 시설 농약 잔류량 조사·검사 업무 이양

호수, 습지 등 특화된 자연환경의 보존육성과 국·공유림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등 개발로 도시민의 체류형 관광 유도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설치 허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 귀향마을 조성 등을 위한 주택공급기준 특례
-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입목의 벌채 등 허용

지역의 역사·유적지 및 영화 촬영지 등을 이용한 테마공원 조성과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영화제 유치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별도 설정,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폐율 별도 설정
- 박물관 · 미술관의 학예사 공동고용 허용, 야외전시·촬영시설 설치 시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 테마공원 조성 등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특례

5 향토자원 진흥 특구

특산물 재배단지의 집단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그 특산물의 가공·저정 및 판매시설을 건립하고 특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농지의 위탁경영, 사용대·임대 허용 : 재배단지 조성
-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우선 심사
- 종자업 영위 시설기준 완화, 종자관리사 공동고용 허용
- 토지의 사용 및 수용 허용(특화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간주)
-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등 의제, 집유업·유가공업의 허가권 이양
- 품질개량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허용, 연구소 설립을 위한 토지이용특례

청보리, 차밭 등 농업경관 및 농촌체험을 연계, 관광 자원화하여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규모·시설기준 별도 규정
- 농지의 위탁경영, 사용대·임대 허용
- 농민 酒 제조면허 특례, 농촌민박시설 건축을 위한 인·허가 등 의제

<참고 3>

규제특례 법령 목록

1 개별법상의 규제특례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 특성화 중·고교에서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허용
2. 초・중등교육법 제61조
 ⇒ 자율학교 지정대상 확대 (특목고, 시・군・구 설립공립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
 ⇒ 시・군・구 공립학교 설립 가능
4. 초・중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校舍, 운동장 등 설립기준을 조례로 완화
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시행령에 달리 규정하여 완화
6.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시・군・구 설립 공립학교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간주
7. 출입국관리법 제8조
 ⇒ 외국인 사증발급절차 완화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외국인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연장
9.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 특구지정 시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과 협의 간주
10. 도로교통법 제6조
 ⇒ 특구지자체장이 교통제한 요청시 지방경찰청장이 즉시 조치
1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광고물 종류・모양 등의 기준을 달리 규정 가능
1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 광고물 설치 금지제한을 완화
13. 온천법 제19조
 ⇒ 온천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
14. 농어촌정비법 제21조

⇒ 시·도지사 승인 없이 농업기반시설 폐지

15. 농어촌정비법 제77조

⇒ 한계농지정비 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제한 완화

16. 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을 완화

17. 농지법 제22조

⇒ 농지의 임대·사용대 제한을 완화

18. 농지법 제34조

⇒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내, 토지이용제한 완화

19. 농지법 제38조

⇒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시, 용도제한 완화

20. 농지법 제39조

⇒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 가능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 특구장이 산림기반시설 설치가능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①항

⇒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 가능

23, 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 국유림 매각(수의매각)·교환 가능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특구지자체장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지방 도매시장 개설 가능

26. 약사법 제37조

⇒ 한약 도매상 단지 내, 공동으로 관리약사 배치

27. 의료법 제42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분묘의 연고자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무연고의 경우 조례로 공고규정을 달리 정하여 완화

29,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완화

31. 도로법 제40조

⇒ 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관리청은 지체 없이 허용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③항, 제27조 제③항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여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기준 조례로 완화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③항

⇒ 녹지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여 완화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의 2

⇒ 미분양률 제한 없이 산업단지 지정 허용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한 공동행위 허용

2 토지이용 규제특례

1. 초지법 제23조

⇒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 허가

3,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①항, 제④항

⇒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의 허가 및 신고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①항, 제②항

⇒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보안림의 지정해제

7. 농지법 제33조

⇒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

8. 농지법 제36조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농어촌정비법 제20조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10. 하천법 제33조

⇒ 하천의 점용 허가

1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 공유수면 매립 허가

13~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지구지정, 지구단위구역지정・내용・구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50조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유치지역의 지정

25. 도로법 제34조
⇒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26. 사도법 제4조
⇒ 사도개설 허가

3 권한이양 규제특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구 지자체장이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특구 지자체장이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특구 지자체장이 골프장 시설 농약 잔류량 검사 수행

4.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7조
⇒ 특구 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을 도축하여 조리・판매하는 것을 허용

5.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22조
⇒ 집유업・유가공업 영업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특구 지자체장에게 위임

6. 식품위생법 제10조
⇒ 특구 지자체장이 식품 표시내용을 달리 정함

7. 식품위생법 제30조
⇒ 특구 지자체장이 영업시간을 달리 제한

8. 자동차관리법 제25조
⇒ 특구 지자체장이 자동차 운행을 제한

2 외국인주민 1년 동안 35% 증가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7. 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06년(536,627명) 보다 **35%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 '07. 5. 14 ~ 6. 1(3주간)까지 읍면동 단위로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및 자녀 포함)의 실태를 조사(정부의 최초 공식통계)

실태조사 결과요약 및 분석

1 외국인 거주분포

○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

- 90일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722,686명**으로 **인구의 1.5%**에 해당('06년 537천명 대비 **34.7%** 증가)

※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의 증가(41천명) 추세와 함께 '06년 최초 조사시 누락된 기타외국인중 일부가 추가로 조사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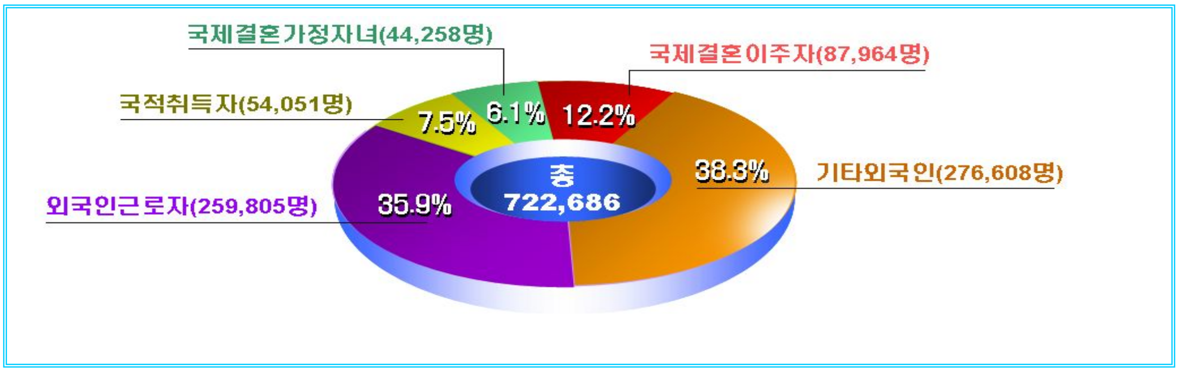

○ 이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은 **431,01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9.6%** 차지

- **성별**로는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남성비율이 높음

※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71%, 국제결혼이주자는 여성이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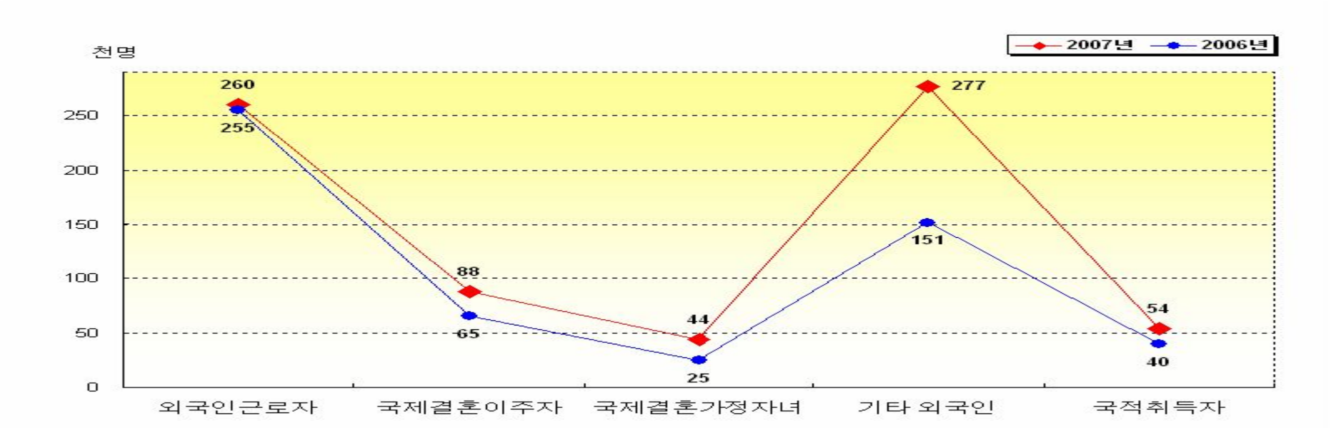

⇨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2 국적별 거주현황

○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집중 유입**되는 현상 지속

- **중국국적**이 **52.4%**(조선족 36.4% 포함), **동남아 국적**이 **23.7%**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6.1%**를 차지

- **국제결혼이주자**는 **동남아 출신자**(여성 97.5%)가 '06년 12천명에서 '07년 22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81.3%)

⇨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의 **언어·문화 등을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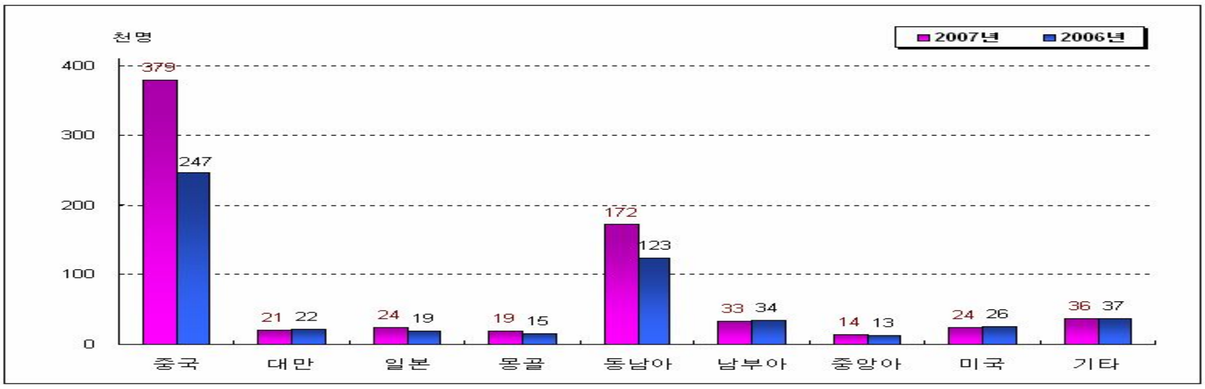

○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대책 마련 시급**

-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전체 외국인의 6.1%에 불과하나 '06년 25천명에서 '07년 19천명(75.3%) 증가하는 등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부각**

※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로 **전체의 92.3% 차지**

⇨ **취학전 아동**(6세 이하)의 **한국어 활동능력** 향상 및 사춘기(12세 이하)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 지원

【유형별 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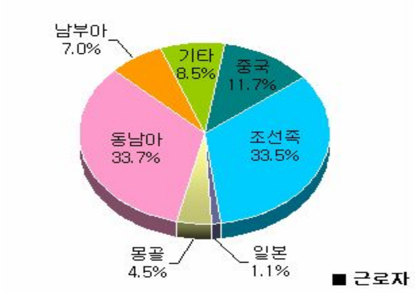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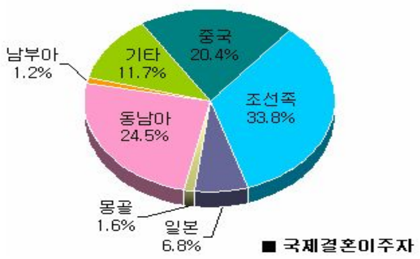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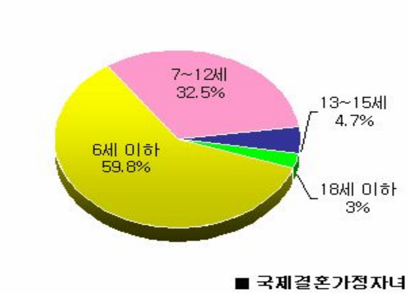

3 지역별 거주현황

○ 외국인주민의 **수도권 집중 양상**

- 전체 외국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4.4%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 이중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29.7%)

- 시·군·구별 평균 거주외국인은 **3,115명**으로 전년(2,293명) 대비 822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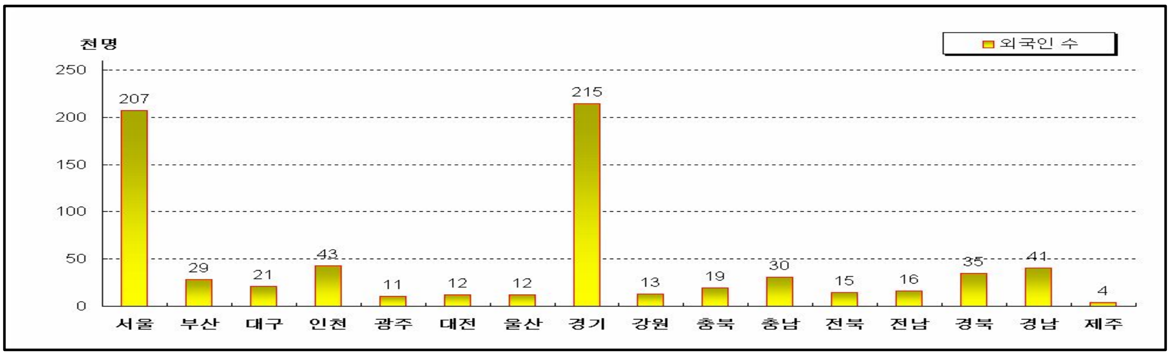

○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의 **증가로 슬럼화** 우려

- 외국인주민의 **규모별 거주 현황**

외국인주민 수	계	100백명 이상	100~50백명	50~10백명	10~5백명	5~1백명	1백명 미만
시·군·구 수	232	**16(8)**	29(4)	93(5)	38(△8)	55(△6)	1(△5)

※ ( )는 '06년 대비 증감 현황임

-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 서울 5개소(용산,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인천 2개소(남동구, 서구), 경기도 9개소(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부천, 시흥, 화성, 김포)

-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은
  - **조선족**(6) : 서울 4개소(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경기 2개소(안산 · 수원)
  - **동남아**(6) : 인천 남동구, 경기 4개소(화성, 안산, 시흥, 김포), 경남 김해

⇨ 외국인 집단거주에 따라 **슬럼화** 되지 않도록 **특화 마을 ·거리 조성** 등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참고자료

□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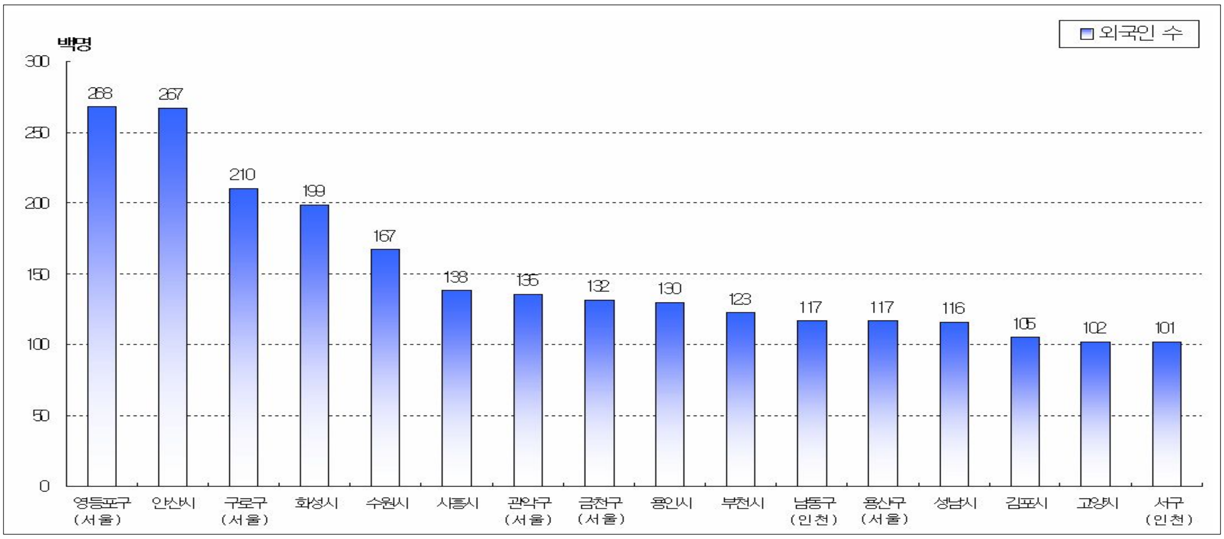

○ 전체 시군구 대비 6.9% 차지

□ 외국인주민이 **3,000명 이상 증가**한 시군구

○ 영등포구, 구로구 등 ⇨ 급속한 집거지화 추세 반영

❑ 외국인주민 **증가율**이 80%이상인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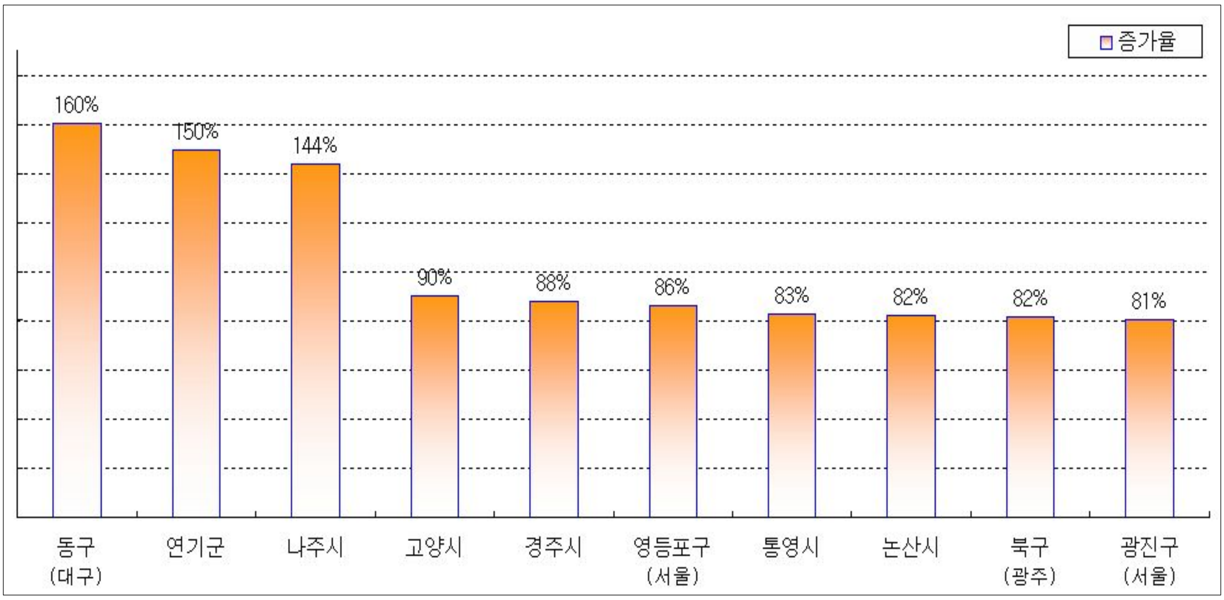

※'06년 외국인주민 500명이상인 시군구 대상

○ 대구 동구, 연기군, 나주시 ⇨ 혁신도시, 신행정수도, 공업단지 조성 등

❑ 외국인주민이 **10% 이상 감소한**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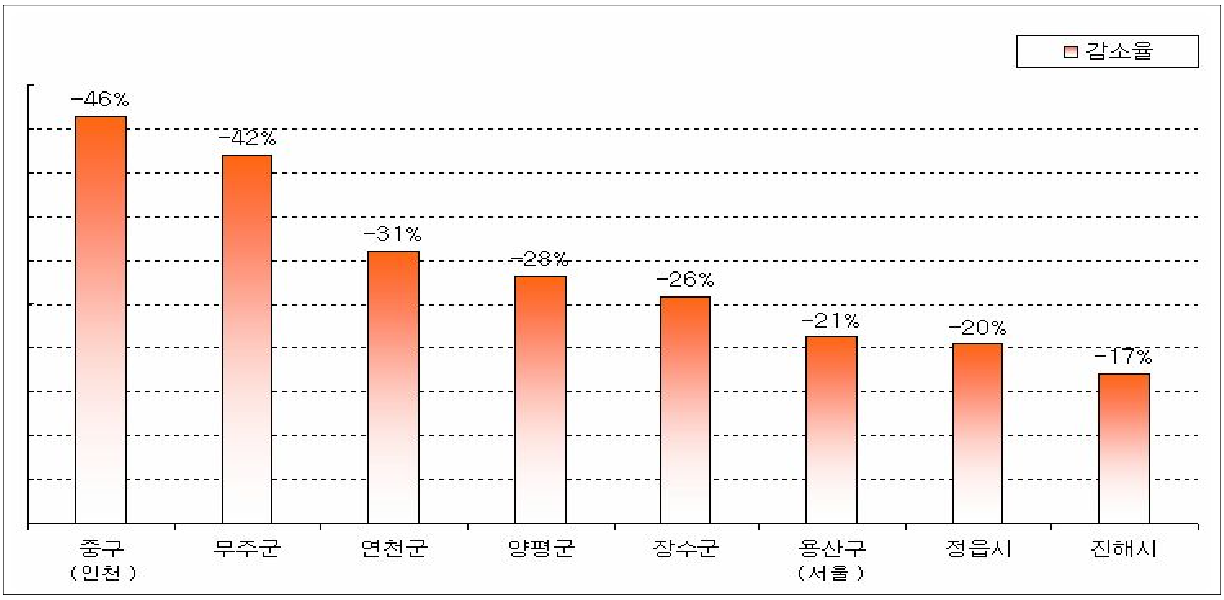

○ 외국인 내항선원의 이동과 농촌지역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유출 등

3 공사를 따기 위해 주소 옮겨도 3개월 지나야 수주가능

-행자부, 재해지역 『철새업체 』 근절대책 마련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2006년** 재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으로 **복구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 과도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운영, 철새업체의 난립** 등 수의계약이 축소되고 **경쟁입찰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자부 예규)』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007. 7.25) 하였다.

1. 전국 우수업체 재해복구 시공참여

○ 현재 70억원미만 공사(전문공사는 6억원미만), 1.9억원미만의 설계·감리용역은 시·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가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 **대규모 재해발생**지역에서도 **과도하게 지역제한 입찰**(95%이상)을 실시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업체수 부족** 등으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재해복구물량, 복구이행 난이도, 지역업체수,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제한 대상이라도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또한, 소규모 수의계약대상(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설계·감리 3천만원미만)에 대하여도 **현재 시·군내 소재업체**로 지역제한에 의한 견적입찰을 하고 있으나,

- 금년부터는 재해피해 복구비가 해당 자치단체 **당초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지역까지 지역제한범위를 확대토록 하여 지역업체간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2. 특정업체 과다수주로 인한 부작용 해소

○ 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지역에서 업체가 동일시기에 과다하게 수주하여 시공이 지연되거나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 5억원 미만 공사나 1억원 미만 설계용역 등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이 3건 이상 되는 업체는 낙찰에서 탈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철새업체 난립방지

○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이 종전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지업체가 재해지역으로 한꺼번에 이전하는 『**철새업체**』**가** 난립하였다.

○ 철새업체는 일반적으로 인력·장비는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하는 이른바 Paper company로서 수주를 하게 되면 현지지역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특별재난선포 지역에서는 **재해 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以前)**에 전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도 사실상 낙찰이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4. 개산계약(概算契約)제도 일부개선

○ 2006년『**개산계약제도**』를 처음 적용해 본 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는 **1개월 이상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 수해지역에 대규모 쓰레기가 발생되어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개산계약대상**에 **쓰레기 처리 용역**을 추가하여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후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였다.

○ 또한,『개산계약(概算契約)』을 **남용**하여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금년부터는 당초 계약금액 대비 정산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확정계약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고, 추가 발생 물량**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5. 무분별한 분할발주 제한

○ 앞으로는 재해발생지역에서 **동일구조물공사**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 이는 **체계적 시공**이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동일구조물 공사**를 분할함으로서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을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4 과소동 통폐합 본격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중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연계하여 동이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을 7. 18. 시·도 자치 행정국장 회의를 통하여 시달하였다.**

□ **이번 지침은 시·도 의견수렴 및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토론, 행자부 지방행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 인구 2만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5~6만을 감안토록 하였다.

○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토록 하고

-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활용토록 하였다.
- 특히, 폐지동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관계부처(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시설설치비(최대 2억1천만원) 및 기자재구입비(3천만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 통·폐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자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 한편, 통폐합이 금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표구 공고 및 선거인명부작성일을 고려하여 통·폐합 시기를 조정토록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

□ 행정자치부는 7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와 공동으로 제2기('08～'10년)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70개 시·군을 선정·발표하였다.

○ 제2기 대상지역으로는 연천, 삼척, 옥천, 제천, 서천, 공주, 예산, 홍성, 정읍, 영광, 안동, 영천, 함안(13개 시·군)이 신규 선정되었고, 제1기 대상지역중 13개 군은 제외되었다.

* 제1기 평가 부진 10개 지역 교체, 낙후도 개선 4개군중 3개 지역 교체(강화는 재선정)

□ 신활력사업은 '04. 7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구체화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서,

○ '05년부터 '13년까지 3기로 나누어 최대 9년간 지원되며 제1기('05～'07년)에는 전국 70개 시·군에 대해 국고 5,782억원을 지원하였고,

○ 당초 계획에서 매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신활력지역을 재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진행되어온 이번 평가ㆍ선정절차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라는 참여정부의 확고한 정책철학을 견지하면서도,

○ 낙후지역의 의타심을 초래할 수 있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H/W 위주 사업을 탈피하고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강화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 및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등 S/W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 지역발전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일선 시ㆍ군의 책임 있고 성실한 사업관리노력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 구체적인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교수,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담당하였고 낙후도 조사, 서면평가, 현장 실사, 종합평가를 병행하였다.

○ ‘05년 제1기 지역 선정시에는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3대 분야, 4개 지표)를 적용한 낙후도 평가에 따라 낙후도 상위 30%이내 70개 지역을 선정하였지만,

○ 제2기 지역 선정시에는 낙후도와 함께 제1기의 사업집행상황, 사업성과 및 기대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부진 시ㆍ군을 제외하여 70개 지역을 재선정하였다.

- 신규지역 선정도 낙후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차순위 낙후 지자체(낙후도 71~90위) 및 제1기 지역중 낙후도 개선 지자체 등 총 26개 시ㆍ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경쟁적 공모절차를 거쳐 제1기와 비교하여 총 13개 지역을 교체하였다.

□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제1기 지역중 우수 시·군은 지역특유의 사업주제 선정 및 사업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안정적·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기대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반면,

○ 부진 시·군은 신활력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업집행률 저조, 사업계획 변경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 신규 공모지역들은 대부분 전문가의 자문·컨설팅, 자체 워크숍 개최, 우수 시·군의 벤치마킹, 주민참여를 통해 제1기에 비해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시·군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제2기 신활력지역 확정됨에 따라 '07년부터 신활력사업을 이관받은 농림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 목표를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목표관리위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각 지역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제2기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낙후 시·군에 대해서도 기존 추진사업이 방치되지 않고 지역혁신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인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활력사업 관련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 (☎ 02-2100-8241)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 02-500-2084)

【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 결과 】

시·도	시 ·군
인 천(1)	강화군
경 기(1)	연천군
강 원(10)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 북(7)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6)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전 북(9)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15)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12)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경 남(9)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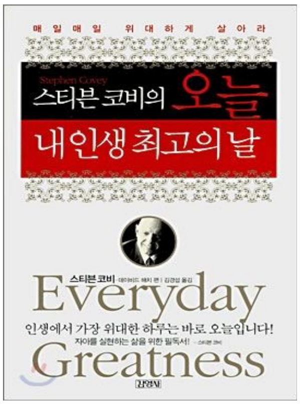

도서명 :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저자명 : 스티븐 코비
출판사 : 김영사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473
가 격 : 14,000원

오늘은 당신 인생 최고의 날, 하루를 위대하게 살면 인생이 바뀐다! 자기계발의 바이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의 인생 조언

치열한 경쟁사회,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비밀스런 법칙이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스킬들만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성공 방법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스티븐 코비 박사는 비결이나 법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칙과 신념을 지킬 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라고 강요하는 지침서나 방법만 알려주고 끝나는 자기기계발서가 아니다. 이 책은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돕는 농부, 매일 말썽을 부리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정직한 교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동료. 마하트마 간디나 에이브러햄 링컨, 테레사 수녀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로 거듭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오늘 하루만 위대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나태하기만 하던 일상을 180도 바꾸게 될 것이다.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이론이 아니라 비전, 혁신, 겸손, 탁월함, 공감, 아량, 끈기, 균형 같은 인생의 원칙들과 사람들이 그 원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스티븐 코비 박사를 성공으로 이끈 평생의 원칙과 신념을 오롯이 담은 책!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 그보다 더욱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전세계 독자들을 감동시킨 평범하지만 위대한 66명의 이야기

8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통찰력을 제공해온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스티븐 코비는 충격적인 감동을 주는 66 명의 이야기를 고르고 골라 전한다.

사고로 언어능력에 손상을 입어 의사조차 치료를 포기한 아이를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 치료에 성공한 이야기, 슈퍼마켓 포장 일조차 경험이 없어 쫓겨날 뻔했다가 성공한 한 개그맨,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헌신하는 수녀,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연주를 멈추지 않는 첼리스트의 이야기는 감동을 뛰어넘은 열정과 용기를 일깨운다.

평범하지만 매일매일 위대하게 살기로 선택한 66명의 이야기는 가족에게는 희망을, 개인에게는 용기와 비전을, 기업에는 열정을 선사할 것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